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,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, 승진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축소
(안 제30조제2항 일부개정)
-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5~10%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% 이내의 비율로 축소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4. 11. 4. ~ 11. 25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전단 중 “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,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”를 “점수와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100퍼센트로 합산하여”로, “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”를 “95퍼센트 이상”으로, “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”을 “5퍼센트로 이내에서 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) 2025년 1월 31일 및 202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6년 1월 30일 이전에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) ① (생략)	제30조(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,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,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,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.	② ----- 점수와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100퍼센트로 합산하여 ----- ----- 95퍼센트 이상----- ----- 5퍼센트로 이내에서 정----- . 단,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락처	(044) 201 - 8406